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등 허가조건 부여 근거 마련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8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등 허가조건 부여 근거 마련	3
2.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근거 추가	11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6일 박홍배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등 허가조건 부여 근거 마련

개정안은 통합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6조제3항), 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의 인용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①·② (생략)	제6조(통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 3. (생략)

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제7조(허가기준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제5항-----

-----.

③ -----

제6조제5항-----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 한 검토	2. 제6조제5항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에 대해 매체별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임.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배경) 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에 대해 매체별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년~)
- (대상) 20개 업종 중 수질 700톤/일 배출 또는 대기 20톤/연 이상 발생 사업장
- '17~'24년 19개 업종 1,307개 사업장의 통합허가 완료

< 연도별 허가 실적 및 계획 >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23-'27.6]

업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주류,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 수	294개	239개	183개	162개	429개	28개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② ~ ⑨ (생략)

- (가동개시) 사업자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등이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적정 운영·관리
- (연간보고서) 사업자는 매년 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운영·관리)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²⁾, 사업자가 가동개시를 신고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를 수리³⁾하여야 함.

현행법상 통합허가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법 제6조제3항⁴⁾을 근거로 개별 환경법률(대기·수질·악취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위주로 허가조건을 부과해왔음.⁵⁾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허가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은 대기·수질 오염 외에도 다양한 기후·환경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허가조건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납사분해공정(NCC) 시설 주변의 냉각 압축기 메탄 누출 사례처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동법과 실질적·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조치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기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석상 한계가 있는 상황임.

[메탄가스 냉각 압축기 시설 개선 권고 사례]

- ▶ 위성사진으로 납사분해공정시설(NCC)주변 고농도 메탄 누출을 발견(최대 1,800ppm)하여, 해당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NCC 후단의 냉각 압축기에서 메탄가스 누출을 확인

⇒ 메탄가스 냉각 압축기 보수 및 시설개선(플레이스택을 통한 소각 등) 요청

		
NCC 공정 내 압축기	압축기 배출구	압축기 배출구(OGI 카메라)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5) 법률에 허가조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법상 목적 및 정의규정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대기, 수질, 악취, 소음 등)의 배출 관리와 관련된 허가조건을 부과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 시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6)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조치,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7)에 따른 자원순환 촉진 조치,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8)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폭기조 운영방식 개선(에너지 효율), 동종업계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유도(순환경제), 반도체 Fab당 용수사용량 절감 유도(물순환) 등 오염물질 관리를 넘어선 종합적인 기후·환경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행위의 목적 및 권한 행사 주체가 모호하고 ‘허가조건’의 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

개정안	수정안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 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u>배출 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u>

둘째, 개정안과 같이 3개 호의 조치만을 한정적으로 명시할 경우, 행정청이 기존에 부과해오던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허가조건이 법률상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기존 허가조건 부과 권한을 명확히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외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

개정안	수정안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 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u>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u>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 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u>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외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u>

2.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근거 추가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현행 ‘최대배출기준의 변경’ 외에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 ----- ----- ----- ----- ----- ----- ----- -----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

현행법 제9조제1항은 5년 주기의 허가배출기준 변경 사유를 ‘제24조제4항9)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최적가용기법)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이로 인해 최대배출기준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오염물질 영향 예측 모델(시뮬레이션 기법) 고도화 등 제8조제1항¹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허가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여 기준을 재조정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음.¹¹⁾

이에 개정안은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변경 사유로 추가하여, 기준 산정 방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5년 주기 검토 시 변경된 방법을 기존 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허가조건 변경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허가배출기준 변경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참고자료 2 참조)

11) 예컨대 대기·수질 오염물질 영향 평가 공식, 환경기준 연계 산정방식 등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개정되어도 이를 기존 허가사업장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장에게도 5년 주기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최신 환경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최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8(4)
포름알데히드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불소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1.7(12) 1.9(12)
납화합물 (mg/Sm ³)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0.16(12) 0.36(12) 0.18(12)
크롬화합물 (mg/Sm ³)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0.15(12) 0.19(12)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 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이상이면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일산화탄소 (ppm)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45(12)
스틸렌 (ppm)	가) 스틸렌 모노머 제조시설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시설	16 16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 일 이전 설치시설) (2)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3)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16(15) 12(7) 12
황산화물 (ppm)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탄화수소 (THC) (ppm)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리 처 리시설	150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 일 이후 설치시설)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7 7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 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다)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 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라)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9 9 13 24 5
납화합물 (mg/Sm ³)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아연화합물 (mg/Sm ³)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3
탄화수소 (THC) (ppm)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산알칼리처 리 시설	150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 나)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9(4) 28(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폐황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소각시설 (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하며, 2015년 1 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만 해당 한다)	120(4) 180(8) 100(4)
황화수소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4)

(ppm)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	3(4)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30(12) 115(12)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실리카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	135 145 50(12)
먼지 (mg/Sm ³)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5 20
황산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의 황산제조시설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	160(8)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아연화합물 (mg/Sm ³)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의 용해시설	3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일산화탄소 (ppm)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인 시설)	48(12)
시안화수소 (ppm)	도료 제조시설	3

벤젠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5 5 5
포름알데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6 6
탄화수소 (ppm)	가) 염료 제조시설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라) 플라스틱·고무첨가제 제조시설	180 180 180 180
크롬화합물 (mg/Sm ³)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0.3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25

10) 영 별표 1 제13호·제14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화학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공정의 표백시설	3

11)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질소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44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불소화합물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페놀화합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탄화수소 (ppm)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가열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200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암모니아 (ppm)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5
염화수소 (ppm)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질소산화물 (ppm)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11
포름알데히드 (ppm)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6

불소화합물 (ppm)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라)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크롬화합물 (mg/Sm ³)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페놀화합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13)
질소산화물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13)
염화수소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6(13)
납화합물 (mg/Sm ³)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4(13)

벤젠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
페놀화합물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
포름알데히드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6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배출시설이 보일러인 경우만 해당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로서 유연탄 사용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6)
황산화물 (ppm)	석유코크스 사용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91(6)
질소산화물 (ppm)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38(4)

비고

1. 최대배출기준 난의 표준산소농도는 배출가스 중 산소의 비율을 말한다.
2.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전기로"란 전기아크로 및 전기유도로를 말한다.
6.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용융·용해시설"이란 용선로(鎔銑爐: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반사로 및 전해로를 말한다.
7.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귀금속"이란 금, 은 및 백금족(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튬, 이리듐, 오스뮴)을 말하고, "희소금속"이란 인듐, 갈륨, 셀레늄, 텔루륨, 레늄, 비스무스, 안티몬 및 텅스텐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₂) 또는 질소산화물(NO₂): 같은 비고 해당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의 비고 제4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같은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되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또는 별표 8 제2호나목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소음·진동

가. 소음의 최대배출기준은 70dB(A)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진동의 최대배출기준은 75dB(V)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	22 이하
부유물질량	30 이하
총질소	60 이하
총인	2 이하

2)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	28 이하

부유물질량	40 이하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3) 영 별표 1 제1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4)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	40 이하

5)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부유물질량	60 이하

6)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부유물질량	50 이하
총인	6 이하

7)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8) 그 밖의 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비고: 1)부터 7)까지의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및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3)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악취

악취의 최대배출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 참고자료 2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나.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이하 "허가배출기준안"이라 한다)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1)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연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연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장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2)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단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단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장기 환경기준을 뺀 값 이하이거나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단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나)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장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3)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대기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3)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않는 대기오염 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검토·변경 시기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 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종전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

가. 소음 및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경우
- 2)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허가배출기준안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1)에 따른 청정지역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4 이하이고,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 1) 외의 지역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4 이하인 경우

나)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다)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2)가)·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수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1)나) 또는 나목2)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2)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악취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하되, 별표 15에 따른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